

## 02

# 미용업 시설기준 중 작업장 내 출입문 설치 시 1/3이상 투명하게 설치 조항 삭제

미용업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만족증대

☏ 추진부서 경기도 평택시 식품정책과 031-8024-3880

### 개선배경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은 별도의 작업장에서 피부관리 · 제모 등과 관련된 영업을 위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기준은 작업장 내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인 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음.

### ※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Ⅱ. 개별기준 4. 미용업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4)항에 따라 시설의 작업장소 · 응접장소 ·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 투명하게 하여야 함. (5) 작업장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개선내용



- 경기도 규제혁파 시 · 군 순회간담회에서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기준 중 작업장 내 출입문 설치 시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건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반영한 사항임.  
( ➔ 19.4.17 : 경기도 규제혁파 순회간담회에 건의  
➔ 19.9.19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 관련 조항 삭제 예고)

## 개선효과



- 미용업은 손님의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특히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의 경우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후 진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피부미용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함.



19.4.17. 2019년 규제혁파 평택시 순회 간담회



19.4.17. 미용업 시설기준 개선 건의



미용업(피부) 시설 현황 ①



19.4.17. 미용업 시설기준 개선 건의

##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서 불멘소리…규제완화 제안

### 미용업 투명한 출입문, 물류단지 건설 착수기간 등 지적

손님이 어느 정도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법상 출입문의 3분의 1은 투명하게 해야 하니 고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평택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불멘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과 평택시 부시장, 담당 부서 관계자,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미용업계 관계자는 “웨딩 센터 안에 있는 피부관리숍이어서 대부분 예비 신부들이 고객인데 투명한 문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때마다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고 전했다.

평택시 위생과는 미용업계 관계자들이 미원을 빙어들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썩다.

제하는 것이 어떻다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규제혁파 간담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평택시에는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가 지난 2월 말 현재 총 1천402곳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가 그간 제기된 민원 중 미용업계 관련건 외에도 2가지 인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물류단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 지역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착수 의무기간을 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실제로 평택의 한 물류단지는 지원시설 분양이 2015년 완료됐으나 2018년에도 지원시설 건설공사 착수율은 60%에 불과해 올해 11월이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도시공사는 물류단지 건설 공사 착수대상에서 ‘지원시설’은 배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물류단지에 기업 입주가 느려지는 상황에서는 상가

등 지원시설을 건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법상 기간을 넘으면 이 행정제금 등의 폐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물류단지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 업소나에너지 소비업체로 지정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추후 목표관리 대상에서 제외돼도 현행법상 4년간은 계속해 목표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이 규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논의된 과제는 내용을 보완 후 중앙 부처에 건의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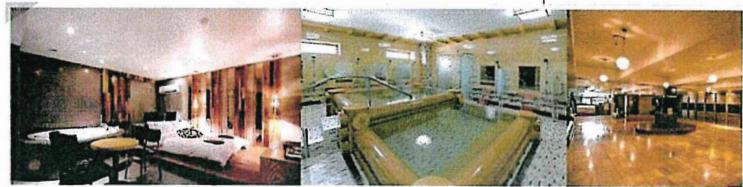
평택시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강내동 기자 koh@hyundaiib.co.kr

17.5 X 17.8 cm

### 미용업(피부) 시설 현황

- ◆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30.~11.9.)



●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30일(월)부터 11월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간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 간호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일반숙박업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출입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숙박영업이 가능하였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와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30객실 또는 연면적 1/3 이상을 확보\*\* 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의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함(2017두34087)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30객실 이하 또는 연면적 1/3 이하도 허용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면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 이·미용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출장 이·미용 시술은 길병,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설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하였다. 또한 미용업소 내 어울기개(승인습)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다만, 말로·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이루어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벽'이 아닌 '커튼' 등으로서, 이용업소 내의 '隱私' 설치 금지는 유지됨

● 목욕업소의 이성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간 점질방 자유출입 시간을 조정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전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하향조정 한다. 24시간 점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심야(22:00~05:00)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의사항을 수용,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 신문 보도자료